윤리 규정

Code of Ethics

제정 2023. 12.19 (이사회 승인)

제1장 적용 범위

제1조 (대상행위)

① 이 윤리 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제2조의 적용 대상자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 행한 축구의 가치와 평판을 훼손하는 축구 관련 불법, 부도덕 또는 비윤리적 행위들(작위 또는 부작위 불문)에 적용된다.

② 윤리규정에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윤리규정은 작위 또는 부작위,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완료 여부 및 주된 행위자인지 주된 행위자를 방조 또는 교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제2조 (대상자)

① 윤리규정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규정을 적용 받는 모든 임직원, 선수, 지도자, 중계인 및 협회 또는 관계단체에 등록된 동호인에게 적용된다. 이하 윤리규정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자"라고 칭한다.

② 협회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 행위 발생 당시에 윤리규정 대상자인 자에 대해 조사 및 결정을 할 수 있고, 행위 발생 이후 해당 행위자가 윤리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3조 (적용 시기)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규율은 그러한 행위 발생 당시 유효한 윤리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조 (규정 적용 원칙)

① 윤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 윤리위원회가 협회의 정관, 규정 및 관습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모든 윤리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스포츠 원칙과 법리로 확립된 선례 및 원칙들에 의거할 수 있다.

제2장 기본 의무

제5조 (일반 의무)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윤리규정의 중요성 및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는 그들의 행동이 FIFA, 협회, 축구산업 및 축구계에 미치는 효과를 유념하고 품위를 지키는 윤리적 자세로 행동하고 신뢰 받는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윤리규정 대상자는 윤리규정에 위반되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시도, 계획,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윤리규정 대상자는 제반 윤리규범(헌장·강령·행동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⑤ 윤리규정 대상자는 제반 윤리규범 및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

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

제6조 (중립성 유지 의무)

① 정부 기관, 국내 및 국제기구, 단체 및 협회와 관련하여, 윤리규정 대상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협회 및 연맹, 리그 및 구단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야 하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부응하는 태도로 행동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는 축구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축구와 관련된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7조 (충실 의무)

윤리규정 대상자는 FIFA, 협회, 연맹, 리그 또는 구단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들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수한 비밀 정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정보가 비밀 유지를 전제로 제공된 것이고 협회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면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윤리규정 대상자가 더 이상 윤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유지된다.

제9조 (보고 의무)

윤리규정 대상자는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 의무)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당사자이든 증인이든, 해당 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윤리위원회의 요청 또는 조사 절차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협조하고 응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사실 규명 등 필요에 따라 윤리규정 대상자에게 정보 제공, 진술, 서류 기타 자료 제출,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절차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자신의 관여 내용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다른 지시가 없다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윤리규정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회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실 은폐,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진술,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윤리규정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 협조하는 자에 대해 그와 관련한 어떠한 협박, 괴롭힘, 보복, 부당한 지시 또는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정한 임무 수행

제11조 (이해상충 회피 의무)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사적인 이해관계(자신 또는 관련된 제3자가 다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로 인하여 정직하고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 또는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잠재적으로 그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역할 또는 의무 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는 선출, 임명, 취임 또는 고용되기에 앞서 그러한 역할 수행시 이해상충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

③ 윤리규정 대상자는 이해상충이 자신의 역할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발생 시 이를 소속 단체, 협회 등 해당 역할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개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선물 기타 혜택의 제공 및 수락)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제3자(축구 또는 축구와 관련 없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하고 이하 동일함)에게 또는 제3자로부터 무상의 물품이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있다.

1. 상징적이거나 미미한 가치만을 가진 경우

2. 윤리규정 대상자가 자신의 재량 하에 있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수되지 않는 경우

3. 그러한 물품이나 혜택 수수가 윤리규정 대상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부당한 금전적 또는 다른 혜택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5.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6.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무상의 물품이나 혜택도 제공, 수락,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수료)

정식의 합법적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니라면 윤리규정 대상자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래를 협상하거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수수료를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여서는 하니 된다.

제14조 (차별 및 명예훼손)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국가, 개인 또는 단체의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사회적 출신, 성별, 장애, 성적 성향,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견해, 빈부, 출생, 연령, 혼인, 지연, 혈연, 학연 또는 기타 다른 상태 또는 이유에 근거하여, 경멸, 차별 또는 경시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존엄, 권위, 품위 또는 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는 축구 경기와 관련하여 협회 및 다른 윤리규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성격의 공개적 성명이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보호)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는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증오 또는 폭력을 유도하기 위한 공격적 자세나 언어를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규정 대상자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든 형태의 괴롭힘 또는 다른 자의 존엄을 고립시키거나 훼손하기 위한 모든 다른 형태의 적대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박, 이익에 대한 약속, 강요 기타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괴롭힘 및 착취는 특별히 금지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 등 성희롱을 비롯하여 폭언, 폭행 등 일체의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위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조, 권한 남용, 내기 및 도박

제16조 (위조 및 변조)

윤리규정 대상자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 변조된 문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권한 남용)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자신의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개인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 중 특히 지도자 또는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진 자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중립적 정보에 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자신의 권한을 부당한 이익이나 부당한 요구를 수용 하는 등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규정 대상자는 축구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파벌문화를 배척하며, 상하 및 동료간 상호 존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능력 위주의 공정한 축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내기, 도박 기타 유사 행위 관여)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축구 경기나 축구 관련 활동과 관련한 내기, 도박, 복권 또는 유사한 행사 또는 거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는 (제3자를 통해 또는 제3자와 연계한 경우 포함) 축구 경기와 관련된 내기, 도박, 복권 기타 유사한 행위 또는 거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향후 예상되는 잠재적 이익을 포함함)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뇌물, 부패, 공금 유용 및 승부 조작

제19조 (뇌물 기타 부정행위)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업무상 또는 기타 다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자에게 주기 위해 누구로부터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부당한 금전적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제3자와 연계해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특히 윤리규정 대상자는 자신이 맡은 업무나 자신의 재량에 속하는 업무적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경제적 또는 다른 부당한 이익을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규정 대상자는 위항의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횡령 및 공금 유용)

윤리규정 대상자는 협회, 연맹, 구단 및 관련 단체의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하거나 연계해서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윤리규정 대상자는 이러한 행위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승부 또는 경기 조작)

① 윤리규정 대상자는 축구 경기나 대회 조작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축구 경기나 대회 조작과 관련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접근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축구 경기 또는 대회의 승부 조작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판단 권한은 그러한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공정위원회가 조사, 판단 및 징계 권한을 가진다.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본 조 위반에 관련된 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공정위원회에 전달한다.

제6장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윤리의식 강화와 비윤리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비윤리 행위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
3. 경기 외적인 비윤리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심의 요청
4. 기타 윤리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2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축구인 인권보호 및 조사, 연구 등을 위해 인권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인권소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축구인 인권보호 규정에 명시한 기능을 수행 한다.

제2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취임 후 2년 기간의 만료일이 속한 해의 협회 정기 총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해상충이 있는 사안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26조 (회의 개최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논의하는 사안에 관한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 (사무처의 협조 및 담당부서)

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회 사무처는 관련 사안에 대한 경위 조사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협회 사무처 내에 담당 부서를 두며, 간사업무는 해당부서 사무국 직원이 담당한다

제28조 (공정위원회와의 관계)

대회 또는 경기(훈련 포함)와 관련된 불법, 위법 기타 징계 대상 행위는 협회 공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처리하고, 대회 또는 경기와 관련되지 않은 비윤리적 또는 인권 침해 행위는 윤리위원회가 조사하여 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윤리 규정 위반시 조치

제29조 (규정 위반시 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위반행위자”)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조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 및/또는 윤리 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회 공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공정위원회에 사안 회부시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또는 윤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공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고, 징계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단, 공정위원회는 징계 결정시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④ 재발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성 행위보다 가중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⑤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또는 공정위원회의 징계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사법 처리 또는 다른 법적 책임 부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별적 또는 중첩적으로 조사, 심의, 결정, 부과 및 집행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30조 (규정의 제. 개정)

① 본 규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개정한다.

②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단,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사회통념에 부합해야 한다.

– 부칙 –

제1조 (효력발생 시기)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